

# ITU, GMPCS-MoU 서명자회의 개최

## 이 흥 림

한국통신 제네바사무소 근무

GMPCS에 관한 협정을 촉진하기 위한 양해각서(GMPCS-MoU)에 대한 서명자 회의가 지난 4월 3일부터 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의 ITU 본부에서 개최되었다<sup>1)</sup>. '96년 10월 개최된 ITU 세계 전기통신정책포럼(WTPF)의 후속단계로 개최된 본 회의에는 76개의 정부 및 사업자를 대표하여 129명이 참가하였으며<sup>2)</sup>, 회의기간 종료일인 4월 4일까지 9개국 정부와 23개 민간통신사업자가 MoU에 서명하였다.<sup>3)</sup> 한편 본 회의에서는 지난 2월 개최된 GMPCS-MoU 개정을 위한 비공식 그룹 회의에서의 양해각서(GMPCS-MoU) 채택에 따른 세부작업으로 이에 기초한 협정안(arrangement)이 작성, 검토되었다.

### 1. GMPCS-MoU 서명

GMPCS-MoU에 대한 서명은 이에 기초한 협정안(arrangement)를 준비하기 위한 기본원칙에

서명하는 것으로서, '97. 4. 4일까지 GMPCS사업을 적극 추진코자 하는 일부국가의 정부와 사업자(GMPCS 시스템운영자, 서비스제공자, 제조업체 등), 그리고 국가기본 통신시설의 확충 차원에서 이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개도국 정부를 중심으로 총 32개 정부와 사업자가 서명하였다. 서명자 명단은 표1과 같으며, 이를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서명정부 : 미국, 한국, 노르웨이, 핀란드, 몽고, 탄자니아, 케냐, 레바논, 카메룬 (9개국)
- 서명사업자 : 미국(10), 영국(4), 한국(6), 캐나다(2), 일본(1)

한편, 기타 국가들 또는 GMPCS사업에 참여를 추진중인 사업자들은 일부 국가의 경우 MoU에 서명하기 위한 내부 인준절차를 밟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으나 그보다는 다수가 실제 MoU에 기초한 협정안의 내용에 대해 쟁점들이 구체적으로 정리될 때까지 MoU에 대한 서명을 유보하

- 
- 1) 양해각서 명칭: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o facilitate arrangements for Global Mobile Personal Communications by Satellite, including Regional Systems (GMPCS-MoU)'. '96.10월 WTPF에서 초안이 검토된 후 '97.2월 개최된 GMPCS-MoU 개정을 위한 비공식그룹 회의에서 초안에 대한 각국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이 채택되었다.  
본 양해각서는 GMPCS서비스의 범세계적 실시를 위해 GMPCS 사용자 단말기의 국가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마련에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단말기 형식승인, 사용허가 부여, 단말기 표식, 관세조치, 통화량 자료의 공개 등 5개조항에 대해 협정안(arrangement) 마련을 규정하고 있다. (MoU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1차 세계전기통신정책포럼의 결과와 향후의 대응방안', 최용재, TTA 저널 '96. 11/12월호, pp. 101- 103 참고)
  - 2) 금번 회의에는 MoU에 대한 서명자 및 향후 서명예정자가 함께 참가하였으며, 한국에서는 정부와 사업자 대표 11명이 참석하였다. 한편, MoU에 대한 서명에는 MoU 서두에 명시된 대로 각국 정부, GMPCS 시스템운영자, 서비스제공자, 제조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
  - 3) GMPCS-MoU에 대한 서명은 지난 2월 비공식그룹 회의에서 MoU가 채택된 이후부터 시작되었으며, 금번 서명자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하여 서명이 가능하다.

면서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 2. 협정안(arrangement) 검토

지난 2월 개최된 GMPCS-MoU 개정을 위한 비공식그룹 회의에서는 최종 MoU의 챕터과 함께 이에 기초한 협정안(arrangement) 작성성을 위해 표2와 같이 3개의 프로젝트를 결정하였다.

Project	내 용	책 임 자
1	MoU 1조(형식승인), 3조(단말기표식)의 표준관련 사안	Mr. Kennedy (미국, Motorola)
2	MoU 2조(사용허가)의 허가관련 사안	Mr. Lansman (핀란드)
3	MoU 4조(관세협정), 5조(통화량 자료의 공개)의 개도국 관련사안	정보통신부 이재태서기관 (#1)

(#1) Project 3의 경우 개발도상국에서 책임자를 선별키로만 결정하였으며, 이에따라 우리나라 정보통신부의 이재태 서기관이 선발되었다.

이에 따라 금번 회의에서는 이를 프로젝트 그룹별로 마련된 협정안 초안을 검토하고 이를 보완하였다. 협정안의 세부내용은 앞으로도 몇 단계 보완 및 구체화를 거쳐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현 시점에서 생략키로 하고 여기서는 협정안의 성격 및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한 주요 쟁점 및 미결사항만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 협정안(arrangement)의 성격 및 이행약속시 구속력

GMPCS-MoU에의 서명은 이에 기초한 협정

안(arrangement)의 기본원칙과 이러한 협정안의 마련에 협력한다는 의미를 가지며, 구체적인 협정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이행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ITU에서는 협정안 최종안이 작성되면, 사무총장이 MoU 서명 국가들에 협정안의 이의이행을 약속할 것인지에 대해 알려주도록 요청할 계획으로 있다. 특정국이 협정안의 이행에 대해 약속을 하게 되면 비로소 해당국가는 이의 자발적인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 경우 협정안(arrangement)이 국제협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행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더러 자국의 자국내 전기통신과 관련한 각국의 주권과 법, 규제제도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MoU상의 전제가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어 협정안(arrangement)의 성격 및 서명시 구속력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존재하고 있다.

### ○ 형식승인, 단말기 사용허가 부여 등과 관련한 다자간 협정 체결

GMPCS 서비스의 범세계적 실현을 위해서는 사용자 단말기의 국가간 유통과 사용에 있어 제약이 제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 단말기의 형식승인에 있어 국가별 별도 요구방식을 다양하고 형식승인 결과의 국가간 상호인증 방식을 도입하는 동시에 단말기의 사용허가 부여에 있어서도 허가 조건을 일반화하여 특정국가에서 이를 만족하여 사용허가를 부여 받으면 타국에서도 이를 그대로 인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기술적 요구사항의 마련이나 국가 별 규제제도의 정비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운데 반해 GMPCS서비스는 '9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GMPCS서비스 개시에 맞추어 전세계적으로 다수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현안문제로 대두하게 된다.

### ○ 통화량자료의 공개

특정국가에 착·발신되는 통화량자료에 대한 공개는 이를 요구하는 개도국 정부와 실제 GMPCS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 및 이들 사업자가 소재하고 있는 선진국 정부간에 이해가 민감하게 대립되고 있는 부분으로 공개자료의 유형, 공개 수준, 정보제공 주체 등에 관해 논란이 존재하고 있다. 개도국 정부의 경우 자국내 착·발신통화의 by-pass나 탈세, 서비스의 불법이용 등을 우려, 이의 공개를 강하게 요구하고 이에 대한 공개의무를 단말기 사용허가 부여에 연계시켜야 한다고 까지 주장하는 반면 선진국정부나 GMPCS 사업자의 경우 통화량자료를 공개하더라도 이를 자국내 법에 따라 처리할 문제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 추후 양자간 입장 차이의 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 ○ 관세조치

관세조치와 관련, 자국을 방문 또는 경유하는 GMPCS 이용자의 단말에 대해 각국 정부는 해당기관이 관세를 면제해 주도록 권고안을 만들어야하는 바 이를위해 이 분야의 국제협약 내용에 대한 구체적 검토와 이의 적용방안에 대한 세부적 검토가 향후 이루어져야 한다.

### ○ 협정안 이행 관리

협정안이 국제협약이 아닌데다가 ITU가 중심이 되어 MoU 및 협정안과 이의 서명자 및 이행공약자 명단을 관리, 유통한다 하더라도 실제 협정안의 이행 및 이 과정에서의 분쟁에 대한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협정안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이의 이행관리 주체에 대한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 3. 향후 계획

향후 협정안(arrangement) 완료와 관련된 작업일정 계획은 다음과 같다.

- 회의보고서 및 협정안 보완 후 회의참가 정부 및 사업자에 검토요청(4월 중)
- Core group(가칭)결성, 주요 사안별 협정안 내용 구체화 (6월 중 비공식 회의 개최)
- '97. 7월초 협정안(arrangement) 완료를 위한 최종회의 개최
- 이후 MoU 서명자에 대해 협정안 이행과 관련한 공약여부 확인작업 실시

[표1] GMPCS-Mou 서명자 명단 ('97. 4. 4 현재)

일련번호	정부/사업자	서명일자	국가
1	Satphone Telecommunications Services Ltd	05.03.1997	UK
2	Mobile Communications Holdings, Inc	07.03.1997	USA
3	Ministry of Infrastructure Development	14.03.1997	Mongolia
4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TIA)	14.03.1997	USA
5	Inmarsat	17.03.1997	UK
6	Odyssey Telecommunications International Inc(OTI)	21.03.1997	Canada
7	United States of America	20.03.1997	USA
8	Townley Communications Ltd	24.03.1997	UK
9	Iridium LLC	26.03.1997	USA
10	Final Analysis	17.03.1997	USA
11	Motorola	27.03.1997	USA
12	AT&T	26.03.1997	USA
13	NEC	26.03.1997	Japan
14	Finland	03.04.1997	Finland
15	Orbcomm	28.03.1997	USA

일련번호	정부/사업자	서명일자	국가
16	Loral Space & Communications Ltd	01.04.1997	USA
17	Iridium Canada	03.04.1997	Canada
18	Tanzania	03.04.1997	Tanzania
19	Kenya	03.04.1997	Kenya
20	Globalstar	03.04.1997	USA
21	ICO Global Communications	03.04.1997	UK
22	Labanon(Ministry of Posts & Telecommunications)	03.04.1997	Lebanon
23	Norwegian Telecommunications Authority	04.04.1997	Norway
24	Ministry of Posts & Telecommunications	04.04.1997	Cameroon
25	Skybridge L.L.C.	04.04.1997	USA
26	Korea telecom	04.04.1997	Korea
27	Kumho Telecom	04.04.1997	Korea
28	Dacom Carp.	04.04.1997	Korea
29	Samsung Electronics Co.	04.04.1997	Korea
30	Korea	04.04.1997	Korea
31	Iridium Korea	04.04.1997	Korea
32	Hyundai Electronics Industries Co.Ltp	04.04.1997	Korea

